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63호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원전수출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경제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등의 검토 및 자문을 실시하여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2조)

나.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원전수출기획위원회 신설(안 제4조, 제4조의2)

다. 원전수출진흥 지원의 재원 관련 타 법률 인용조항 오류 정정(안 제10조)

라. 고시 재검토 기한 기산일 수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원전수출진흥과
- 전자우편 : jwyang09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원전수출진흥과(전화: 044-203-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발전용 원자로 및 다목적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시설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원전연료 등을 공급하거나, 원자력발전의 기획·연구개발·설계·건설·제작·시운전·운영·정비·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원전수출사업자"란 직접 또는 해외의 현지 법인 및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른 사업자에 투자하여 원전수출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국

내의 개인 또는 법인(국내의 원전수출사업자가 외국에 설립하는 법인 및 해외의 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원전수출전략협의회 및 원전수출촉진기관

제3조(원전수출전략협의회) ①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한국전력공사사장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사장

4. 한전KPS주식회사사장,

5.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사장

6. 한국수출입은행장

7.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8.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의 대표

9. 그 밖에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협의회에는 금융지원, 인증지원 등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 원전수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간사로 두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2. 원전수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원전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원전수출기획위원회) ① 협의회에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원전수출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기획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위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이 된다.

④ 위원은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계약, 회계, 법률, 국제관계 분야 등 전문가 중에서 기획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의2(기획위의 기능) ① 기획위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원전수출진흥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원전수출진흥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3.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역할 및 협업

4. 그 밖에 원전전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3조제4항의 기관은 기획위의 원활한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위 위원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위 위원이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할 안전과 관련하여 회피, 기피 및 제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은 기획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기획위 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인지하거나 제3조제4항의 기관으로부터 위원의 회피, 기피 및 제척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검토 및 자문에서 제척시킬 수 있다.

④ 기획위는 원전수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알려거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은 해당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의 내용, 방향,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라 권고사항에 구속되거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원전수출촉진기관의 지정) ①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전수출촉진기관의 지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원전수출진흥사업

제6조(시장개척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원전시장 동향의 조사·분석 및 정보 공유
2. 국가별 원전관련 제도·정책의 조사·분석
3.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4.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 원전수출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6. 그 밖에 원전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정보·자료를 원전수출사업자 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항 각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및 원전수출사업자는 원전수출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금융지원 등) ①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원전수출사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원전수출사업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들을 상호 연계하여 원전수출사업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제품·기술개발 및 인증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와 원전수출사업자의 제품·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원전수출사업자 소개서 제작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들의 생산품목 및 보유기술, 인증 현황 등을 포함한 원전수출사업자 소개서 등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의 재원) 제6조 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49조제12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제6호 및 다른 관련 법령의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원전수출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개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한다.

부칙 <제2021-63호, 2021. 4.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생 략) 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1. (생 략) 2.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3. (생 략)
제3조(원전수출전략협의회) ① ~ 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된다. ④ ~ ⑥ (생 략) ⑦ 협의회에 <u>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u> 을 간사로 두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생 략)	제3조(원전수출전략협의회) ① ~ ② (생 략) ③ ----- <u>산업통상부장관</u> -----. ④ ~ ⑥ (생 략) ⑦ 협의회에 <u>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u> 을 간사로 두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생 략)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의2(협의회의 기능) ----- ----- -----.
< 신 설 >	제4조(원전수출기획위원회) ① 협의회에 <u>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원전수출</u>

현행	개정안
	<u>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u>② 기획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기획위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이 된다.</u> <u>④ 위원은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계약, 회계, 법률, 국제관계 분야 등 전문가 중에서 기획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u>
<u>< 신설 ></u>	<u>제4조의2(기획위의 기능) ① 기획위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u> <u>1. 원전수출진흥사업의 기획 및 조정</u> <u>2. 원전수출진흥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u> <u>3.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역할 및 협업</u> <u>4. 그 밖에 원전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u>② 제3조제4항의 기관은 기획위의</u>

현 행	개 정 안
	<u>원활한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위 위원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u> <u>③ 기획위 위원이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할 안전과 관련하여 회피, 기피 및 제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은 기획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기획위 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인지하거나 제3조제4항의 기관으로부터 위원의 회피, 기피 및 제척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검토 및 자문에서 제척시킬 수 있다.</u> <u>④ 기획위는 원전수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알리거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u> <u>⑤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은 해당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의 내용, 방향,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라 권고사항에 구속되거나 미</u>

현 행	개 정 안
	<u>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u>
제6조(시장개척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원전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원전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정보·자료를 원전수출사업자 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시장개척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u>산업통상부장관</u> ----- ----- ----- -----. 1. ~ 6. (생략) ②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 -----.
제7조(금융지원 등) ①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u>산업통상자원부</u>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금융지원 등) ① ----- ----- <u>산업통상부</u> ----- ----- ----- -----. ② (생략)
제8조(제품·기술개발 및 인증 등의 지원)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원전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제8조(제품·기술개발 및 인증 등의 지원) ① <u>산업통상부장관</u> ----- ----- -----

현 행	개 정 안
수 있다.	-----.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원전수출 사업자와 원전수출사업자의 제품·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교육 및 컨설 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제9조 (원전수출사업자 소개서 제작 지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원전수 출 사업자들의 생산품목 및 보유기 술, 인증 현황 등을 포함한 원전수출 사업자 소개서 등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원전수출사업자 소개서 제작 지원)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제10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의 재원) 제6조 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 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49조제11호와 동 법 시행령 제34조제6호 및 다른 관 련 법령의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지 원한다.	제10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의 재원) - ----- ----- -----제49조제12호----- ----- ----- -----.
제11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업무) <u>산업 통상자원부장관</u> 은 제6조부터 제9조 까지의 원전수출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원전수출 촉진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 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업무) <u>산업 통상부장관</u> ----- ----- ----- ----- -----.
제12조(재검토기한) <u>산업통상자원부</u>	제12조(재검토기한) <u>산업통상부장관</u>

현 행	개 정 안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u>2020년 7월 1일 기준으</u> <u>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u> <u>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u> <u>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u> <u>하여야 한다.</u>	----- ----- ----- 이 고시 개정 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 <u>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한다.</u>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u>고시한 날로</u> <u>부터</u>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u>발령한 날부</u> <u>터</u> 시행한다.